

<p>제2024-23호 2024년 3월 12일(화)</p>	<p>시  보</p> <p>여수시</p>	<p>시정지표</p> <p>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836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여수시 규칙 제837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여수시 조례 제2036호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11
○ 여수시 조례 제2037호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	15
○ 여수시 조례 제2038호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여수시 조례 제2039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여수시 조례 제2040호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30
○ 여수시 조례 제2041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여수시 조례 제2042호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40
○ 여수시 조례 제2043호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 여수시 조례 제2044호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여수시 조례 제2045호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52
○ 여수시 조례 제2046호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55
○ 여수시 조례 제2047호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8
○ 여수시 조례 제2048호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여수시 조례 제2049호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 여수시 조례 제2050호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68
○ 여수시 조례 제2051호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72
○ 여수시 조례 제2052호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76
○ 여수시 조례 제2053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 여수시 조례 제2054호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 여수시 조례 제2055호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 여수시 조례 제2056호	여수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 여수시 조례 제2057호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 여수시 조례 제2058호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100
○ 여수시 조례 제2059호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 여수시 조례 제2060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 여수시 조례 제2061호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4년 제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중



여수시 규칙 제836호

붙임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시전동 77통, 78통, 79통, 80통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77	1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1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2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2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3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2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1603,1703,1803,1903,2003,2103,2203,23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 1604,1704,1804,1904,2004,2104,2204,2304
		4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3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5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4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6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4동) 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 1703,1803,1903,2003,2103,2203,2303 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 1704,1804,1904,2004,2104,2204,2304
		7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상가동, 관리동)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78	1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5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
		2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6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3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7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
		4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8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
		5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9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
		6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10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7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10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1603,1703,1803,1903,2003,2103,2203,2303,24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 1604,1704,1804,1904,2004,2104,2204,2304,2404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79	1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1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2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2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3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2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1603,1703,1803,1903,2003,2103,2203,2303,24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 1604,1704,1804,1904,2004,2104,2204,2304,2404
		4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3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5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4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80	1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5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 1302,1402,1502,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2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5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1603,1703,1803,1903,2003,2103,2203,2303,24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 1604,1704,1804,1904,2004,2104,2204,2304,2404
		3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6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2102,2202,2302,2402,2502
		4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7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
		5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8동)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6	응천동 1840, 응천더힐 2단지(상가동, 관리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77	1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1동) 101~2501, 102~2502	77	77	1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1동) 101~2501, 102~2502
		2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2동) 101~2501, 102~2502			2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2동) 101~2501, 102~2502
		3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2동) 103~2303, 104~2304			3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2동) 103~2303, 104~2304
		4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3동) 101~2501, 102~2502			4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3동) 101~2501, 102~2502
		5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4동) 201~2501, 202~2502			5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4동) 201~2501, 202~2502
		6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4동) 203~2303, 204~2304			6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4동) 203~2303, 204~2304
		7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 (상가동, 관리동)			7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상가동, 관리동)
	78	1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5동) 101~2401, 102~2402	78	78	1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5동) 101~2401, 102~2402
		2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6동) 201~2501, 202~2502			2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6동) 201~2501, 202~2502
		3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7동) 101~2301, 102~2302			3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7동) 101~2301, 102~2302
		4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8동) 101~2001, 102~2002			4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8동) 101~2001, 102~2002
		5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09동) 101~2101, 102~2102			5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09동) 101~2101, 102~2102
		6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10동) 201~2501, 202~2502			6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10동) 201~2501, 202~2502
		7	웅천동 1843,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110동) 103~2403, 104~2404			7	웅천동 1843, 웅천더힐 1단지(110동) 103~2403, 104~2404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79	1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1동) 201~2401, 202~2402	79		1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1동) 201~2401, 202~2402
		2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2동) 101~2501, 102~2502			2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2동) 101~2501, 102~2502
		3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2동) 103~2403, 104~2404			3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2동) 103~2403, 104~2404
		4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3동) 201~2501, 202~2502			4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3동) 201~2501, 202~2502
		5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4동) 101~2001, 102~2002			5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4동) 101~2001, 102~2002
	80	1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5동) 101~2501, 102~2502	80		1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5동) 101~2501, 102~2502
		2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5동) 103~2403, 104~2404			2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5동) 103~2403, 104~2404
		3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6동) 101~2501, 102~2502			3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6동) 101~2501, 102~2502
		4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7동) 101~1801, 102~1802			4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7동) 101~1801, 102~1802
		5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208동) 101~1501, 102~1502			5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208동) 101~1501, 102~1502
		6	웅천동 1840,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 (상가동, 관리동)			6	웅천동 1840, 웅천더힐 2단지(상가동, 관리동)

2024년 제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37호

붙임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37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를 “별표 2에서”로 한다.

별표 1 중 도표 내 동시장란, 봉산시장란을 삭제하고, 별표 3,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u>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u> 정하는 바와 같다.</p>	<p>제2조(등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별표 2에서----- -----</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책일몰
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036호

붙임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앴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은 전년도 사업성과,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시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분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손기호



여수시 조례 제2037호
붙임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여수시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5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시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공모전의 공고)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여수시 누리집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응모)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시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응모자에게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

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사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심사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수상작의 공개) ① 시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 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2024.3.12



여수시 조례 제2038호

붙임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공무원채용 및 근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을 “11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상·하반기”를 “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p>1. ----- 7세 이하----- -----.</p>
<p>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p>	<p>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공무원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설치) ----- ----- ----- ----- -----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25조 ----- -----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039호

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립하는 경우”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법 제21조에 따르면,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p> <p>2. 법 제10조의2에 따라 <u>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p> <p>3. ~ 7.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8.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p> <p>4. (생략)</p>	<p>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 -----.</p> <p>1. ----- ----- <u>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p> <p>2. ----- <u>공유재산 관리계획</u> ----- -----</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삭 제></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u>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p>	<p>제17조(무상사용기간)----- -----<u>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u></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2024/123



여수시 조례 제2040호

붙임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2.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3.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 기관의 협력)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를 비롯하여 지역 유관 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심의방법) 공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의견을 고려하여 공개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조교수 이상(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남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또는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위촉 해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참석수당 등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과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경민



여수시 조례 제2041호

붙임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41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명 칭</th> <th style="width: 60%;">주 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설 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u>봉산시장</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봉산 1로 12 (봉산동)</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쌍봉시장</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덕양시장</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u></td> </tr> </tbody> </table>			구분	명 칭	주 소	상설 시장	<u>봉산시장</u>	<u>여수시 봉산 1로 12 (봉산동)</u>	<u>쌍봉시장</u>	<u>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u>	<u>삭제</u>	<u>삭제</u>	<u>덕양시장</u>	<u>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u>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명 칭</th> <th style="width: 60%;">주 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설 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쌍봉시장</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덕양시장</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u></td> </tr> </tbody> </table>			구분	명 칭	주 소	상설 시장	<u>삭제</u>	<u>삭제</u>	<u>쌍봉시장</u>	<u>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u>	<u>삭제</u>	<u>삭제</u>	<u>덕양시장</u>	<u>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u>
구분	명 칭	주 소																											
상설 시장	<u>봉산시장</u>	<u>여수시 봉산 1로 12 (봉산동)</u>																											
	<u>쌍봉시장</u>	<u>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u>																											
	<u>삭제</u>	<u>삭제</u>																											
	<u>덕양시장</u>	<u>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u>																											
구분	명 칭	주 소																											
상설 시장	<u>삭제</u>	<u>삭제</u>																											
	<u>쌍봉시장</u>	<u>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u>																											
	<u>삭제</u>	<u>삭제</u>																											
	<u>덕양시장</u>	<u>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u>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042호

붙임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1부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시의회
2.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

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경미



여수시 조례 제2043호

붙임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대 이상 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효행 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

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경기



여수시 조례 제2044호

붙임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비
5.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제4조 제3항 중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를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로, “필요한 지원을 할” 을 “지원할”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양곡구입비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4.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u>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시설 설비</u></p> <p>5. <u>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u></p> <p>6. <u>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u></p> <p>7. <u>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 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u></p> <p>8.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지원할 ---</u> -----.</p> <p>1. <u>경로당 운영비</u></p> <p>2. <u>경로당 냉난방 연료비</u></p> <p>3. <u>경로당 양곡구입비</u></p> <p>4. <u>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u></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045호

붙임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를 위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046호

붙임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

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명



여수시 조례 제2047호

붙임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경 인



여수시 조례 제2048호

붙임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제3조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차근기



여수시 조례 제2049호

붙임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49호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관광지를”을 “문화재, 문화·관광시설, 관광지 등을”로, “입장료”를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u>문화관광지</u>를 방문할 때에는 <u>입장료</u>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문화재, 문화·관광시설, 관광지</u> 등을 ----- <u>관람료, 입장료, 주차료</u> ----.</p> <p>③ (현행과 같음)</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득



여수시 조례 제2050호

붙임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수거·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 기구 설치 및 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051호

붙임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1부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라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조성·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보전 지역의 관리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활용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조항 추가)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문구 수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조사·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보호·관리) ① 시장은 태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수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

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국내·국제협력)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조례 제2052호

붙임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1부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
3. 개별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섬 별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여수시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2. 대내, 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
5.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섬 지원 정책 담당 국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
2. 섬 발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시장은 위원회 하부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시장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여수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행사 연계)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차근기



여수시 조례 제2053호

붙임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53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을 “및”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및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조례 제2054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생 략)</p>	<p>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신 설〉</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안전 사고 방지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2055호

붙임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사업

10.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과 「<u>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u>」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u>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u>을 말한다. 3. (생 략) <p>제3조(지원 대상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p>	<p>제1조(목적) ----- ----- 「<u>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u>」 제3조-----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u>----- 3. (현행과 같음) <p>제3조(지원 대상사업) ----- ----- ----- ----- -----</p>

현행	개정안
<p>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u>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공적부담</u></p> <p><u><신설></u></p> <p>10. (생략)</p> <p>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u></p> <p>10. <u>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준용규정) -----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갈등유발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12일

여수시장 기린



여수시 조례 제2056호

붙임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상 시설”을 “대상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제3조제6호 및 제7호”를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및 나목 중 “대상 시설”을 각각 “대상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9호”를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과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제4조제1항 중 “대상 시설별”을 “대상시설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시설물의 종류
7. 인·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대상시설별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상시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4. ----- ----- ----- ----- 제3조제7호 및 제8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가. -----대상시설----- ----- -----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나. -----대상시설----- ----- -----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생 략)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	2. ----- 제9호 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과 다목의 사회복지시설
3. ~ 10. (생 략)	4. ~ 11. (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 ----- 대상시설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u>사전고지</u> 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시설물의 종류 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시설물의 종류 7. 인·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기한 8. 대상시설별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057호

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를 각각 “1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다음과 같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로 하고, 같은 호 중 “○ 대행수수료 = 시간당 노임단가 × 검사대행 소요시간 ×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정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업무대행 수수료(부가가치세별도)

- 직접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분야 기술사에게 적용하는 시간당 노임단가(매년 1월1일 기준) × 소요시간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단가 × 검사대행 소요시간 ×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p> <p>2.(생략)</p> <p>3.(생략)</p> <p>4.(생략)</p> <p>5.(생략)</p>	<p>○ <u>산정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업무대행 수수료(부가가치세별도)</u></p> <p>- <u>직접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분야 기술사에게 적용하는 시간당 노임단가(매년 1월 1일 기준) × 소요시간</u></p> <p>- <u>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u></p> <p>- <u>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u></p> <p>2.(현행과 같음)</p> <p>3.(현행과 같음)</p> <p>4.(현행과 같음)</p> <p>5.(현행과 같음)</p>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조례 제2058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1부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1.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여수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보건소장, 담당부서장, 여수시 의회 의원 1명
2. 식품안전 및 영양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라남도의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등) 제8조에 따라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 조성을 위한 조리기구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 등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차기복



여수시 조례 제2059호

붙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시 공보” 를 “정하며 이를 매년 3월 이전 시 공보” 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일)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시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 3. (생략)</p> <p>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시 공보</u>,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p> <p>5.·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정하며 이</u> <u>를 매년 3월 이전 시 공보</u>----- -----.</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1. (생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④ (생략)

[별표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m³당 원인자부담금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100}$$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일)를 적용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α = (1 + R₁) × ... × (1 + 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가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가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가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가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차근기



여수시 조례 제2060호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를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 및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교통약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3호 중 “CCTV” 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 및 교통약자” 를 “교통약자” 로 한다.

- ③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및 태양광 발전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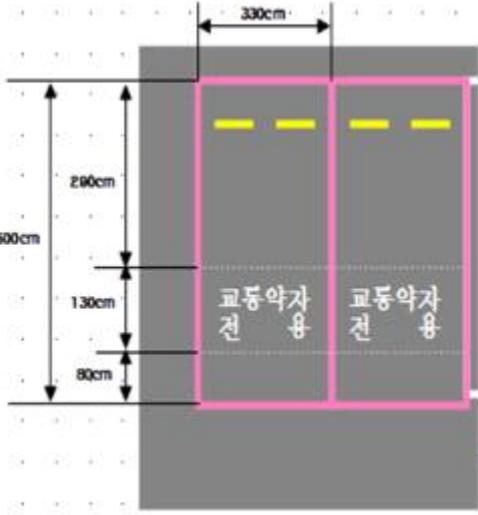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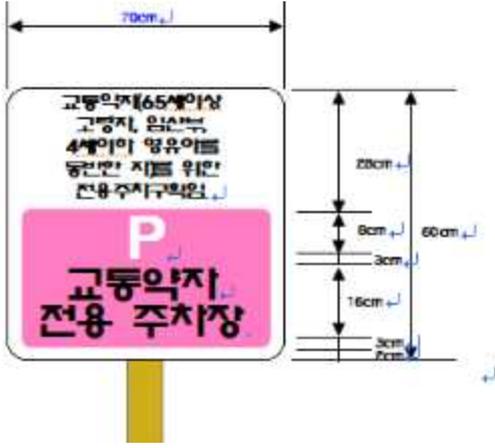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 및 교통약자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으로 본다.

[별표 제5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제12조 관련)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표지판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통로</p>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통로</p>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 (흰색, 검정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 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규 격 : 가로 0.7m×세로 0.6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 구획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③ <u>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u>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p> <p>1. 2. (생략)</p> <p>3. <u>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u></p> <p>4. (생략)</p>	<p>제12조(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p> <p>① ----- ----- <u>교통약자</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u>은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p> <p>④ <u>교통약자</u>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폐쇄회로 텔레비전(CCTV)</u>----- -----</p> <p>4. (현행과 같음)</p>

제16조의3(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 ①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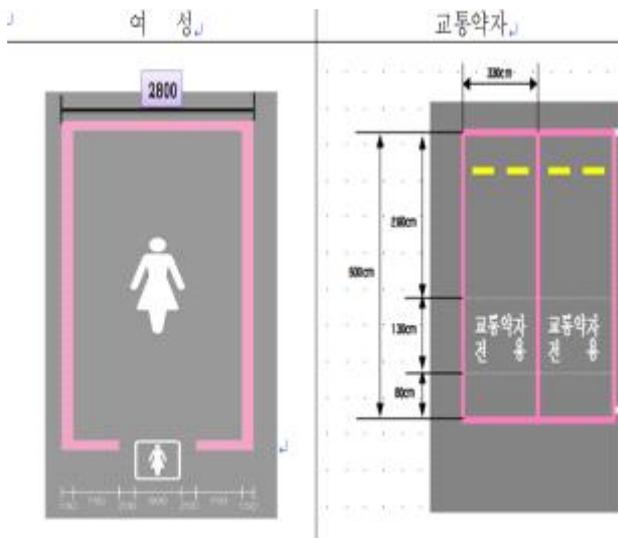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0. 5. 27.]

[별표 5]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 (제12조 관련)

1.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2.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제16조의3(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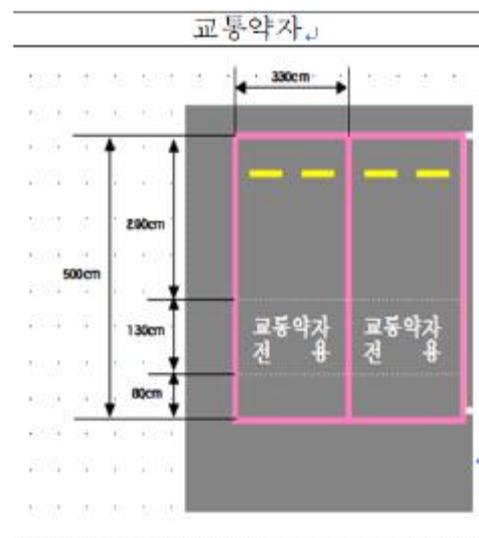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및 태양광 발전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0. 5. 27.]

[별표 5]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 (제12조 관련)

1.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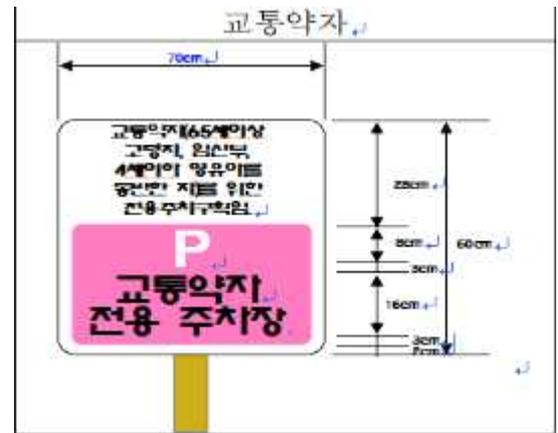
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표지판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 (흰색, 검정색, 남보라)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규 격 : 가로 0.7m×세로 0.6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한다.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 (흰색, 검정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규 격 : 가로 0.7m×세로 0.6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한다.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로점용허
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명



여수시 조례 제2061호

붙임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 1부

여수시 도로점용료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수시 도로점용료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②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u>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u> 점용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p>	<p><u>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u> ①----- ----- ② <u>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u></p>